



Q&A

제품안전 질의응답

# Q&A 제품안전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!

## Q1

DVR(디지털 비디오 레코더)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취득해야할 인 증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? 어댑터를 통하여 사용하는 것과 220V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의 차이에 의해 안전인증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.

## A

DVR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 나, 동 DVR이 전기적·기계적으로 분리된 외부 직류전원장치로부터 직류전원을 공급받아 동작되는 구조의 제품일 경우에는 동 자율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다만, 동 DVR에 직류전원을 공급하는 직류전원장치는 동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품목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은 직류전원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.



## Q2

가구, 파티션 등에 부착사용을 위해 전원코드셋을 사용하지 않고 멀티콘센트에 상호 연결커플러를 부착한 구조의 제품의 안전인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

A

상호연결 커플러가 부착된 멀티콘센트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나 동 제품의 구조가 멀티콘센트를 무한정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임을 알려 드립니다.

## Q3

제모를 하기위해 캔 속에 들어있는 액을 따뜻하게 하여 녹이는 제품으로 '왁스 워머기' 인데 이 제품도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에 해당되는지요?

A

왁스 용해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이므로 출고(통관)전에 안전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한 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판매가 가능한 품목입니다.

## Q4

섬유가 다량 포함된 러닝화, 스니커즈, 트래킹화 및 등산화의 경우에는 섬유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지요?

A

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섬유제품은 의류(외의류, 중의류, 내의류, 학생복, 한복) 및 그 밖의 섬유제품(이불 및 요, 방석류, 쿠션류, 모포, 침낭, 카펫, 모자, 장갑, 양말, 기저귀, 수의, 가발, 손수건, 타올, 머플러, 스카프, 숄, 넥타이, 모기장, 덮개, 가방, 턱받이, 커튼류, 운동화)을 말합니다. 따라서, 섬유가 다량 포함된 러닝화, 스니커즈, 트래킹화 및 등산화는 안전·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해당됩니다.

